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2. 2.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11월 8일

나. 발 의 자: 양송이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4년 11월 15일

라. 상정일자: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1.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양송이 의원)

가. 제안이유

- 기존 어린이 급식시설에 제공하던 급식관리를 노인 및 장애인 급식시설에도 지원하도록 하여 전문 영양사를 통한 맞춤 식단과 조리법 등을 제공하고, 식생활 교육 컨설팅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개정

나.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원대상(안 제5조 및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을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소규모 급식시설에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안 제1조(목적)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제5조를 포함하여 규정함.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급식소”의 정의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구 소내 시설로 정의함.
- 안 제6조(지원대상)에서는 지원대상에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추가하여 규정함.

○ 검토 결과

- 본 안건을 통해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도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2021년 7월 27일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아울러,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의 운영체계를 보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급식소 관리지원 운영

체계와 유사하고, 집단급식 지원이라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어 행정 효율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경우 해당 센터와 연합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또한, 상위법(「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2항)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기(既)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區)에서는 조례 개정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며,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25년 7월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189개소 중(24.7월 기준) 10개소를 선정하여 급식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 참고로, 서울특별시 5개 자치구(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마포구, 중랑구) 및 전국에서는 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6
----------	-----

발의연월일: 2024. 11. .

발의자: 양송이·유승용·신희식
임헌호·전승관·우경란
의원(6인)

1. 제안이유

기존 어린이 급식시설에 제공하던 급식관리를 노인 및 장애인 급식시설에도 지원하도록 하여 전문 영양사를 통한 맞춤 식단과 조리법 등을 제공하고, 식생활 교육 컨설팅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 개정
- 나.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원대상(안 제5조 및 제6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를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어린이에게”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u>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u> <u>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어린이</u> <u>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u> <u>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u>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u> <u>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u> <u>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u> <u>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u> <u>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u> <u>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어린이 급식소</u>”(이하 “<u>급식</u> <u>소</u>”라 한다)란 어린이에게 단 <u>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u> <u>시 영등포구 소재 시설 등을</u> <u>말한다.</u></p> <p><신 설></p>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u>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u> <u>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조례는 「어린이</u> <u>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u> <u>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u> <u>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u> <u>법률」 제5조--- 어린이와 취약</u> <u>계층에게 -----</u> <u>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u> <u>센터-----</u> <u>-----.</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취약계층</u>”이란 「<u>노인·장애</u> <u>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u> <u>전 지원에 관한 법률</u>」(이하 “<u>사회복지시설급식법</u>”이라 한 다) 제2조제1호 따른 <u>노인·</u> <u>장애인 등을 말한다.</u></p> <p>3. “<u>급식소</u>”란 어린이와 취약계</p>

<p>3. 4. (생략)</p>	<p><u>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u></p> <p>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p>
<p>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u>(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 <u>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u>----- ----- ----- ----- -----.</p>
<p>제5조(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u>법 제21조제1항</u>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한다.</p>	<p>제5조(설치 및 운영 등) ① ----- ----- ----- <u>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u>-----.</p>
<p>②·③ (생략)</p> <p>제6조(지원대상) ① <u>법 제21조제1항</u>에 따라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로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원대상) ①----- ----- ----- -----.</p>
<p>1. ~ 6. (생략)</p> <p><u><신설></u></p> <p>② (생략)</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사회복지시설급식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u>급식소</u></p> <p>② (현행과 같음)</p>